

○○중 학생 검정고시 응시자격제한처분 취소 청구 소송

| | | | |
|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|----------|
| 소송종류 | 행정소송 | 법원명 | 인천지방법원 |
| 사건번호 | 2021구합○○○○○ [1심] | 사건유형 | 기타 |
| 원고 | ○○○ | 피고 | 인천광역시교육감 |
| 판결선고일 | [1심]2021. 12. 16. 원고패 | 비고 | |
| 사건개요 | <p>○ 원고는 2019년도에 ○○중학교에 입학하여 재학중 2021. 6. 10.자 ‘정원외 관리대상’ 지정된 학생임. 원고는 2021. 6. 8.에 피고가 공고한 「2021년 제2회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」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였고, 피고는 검정고시 공고문 상 제한규정을 근거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고일 이후 정원외 관리자에 해당하여 시흥응시자격이 제한됨을 전화로 안내함.</p> <p>○ 이에 원고는 ○○중학교에 사전에 출석할 의사가 없음을 학교측에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2021. 3. 2.~ 3. 6.(2일간) 학교에 잠깐 들른 것과, 2021. 3. 4.에 온라인 수업때 채팅앱에 잠시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○○중학교가 과실로 출석처리를 하였으며, 이로 인해 ○○중학교가 원고에게 한 ‘2021. 6. 10.자 정원외 관리자 지정’은 위법한 처분이므로, 피고가 원고에게 한 검정고시 응시자격제한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.</p> | | |
| 주 문 | <p>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</p> <p>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</p> | | |
| 판결이유 | <p>○ 원고의 출석기록에 어떠한 오류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함.</p> <p>○ 원고가 2021. 3. 4. 저녁에 이르러서야 담임교사에게 검정고시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2021. 3. 2.부터의 결석처리를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는 2021. 3. 4.까지는 수업일수에 출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, 그에 의하면 원고는 2021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을 결석한 2021. 6. 10.부터 정원외 관리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함.</p> | | |